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해삼을 포함한 바다생물 서식장 기능을 겸비한 잠제
(특허번호 10-2149503호)
- 발주기관 : 동해시청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주)지에프씨 대표 장덕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동해시 2021년 해삼특화 양식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대한 신기술·특정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 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 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계약함으로써 별도의 특허 사용료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는 발주기관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건설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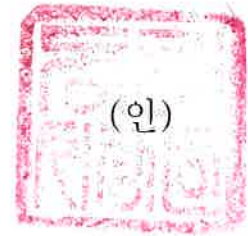
제4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기술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1년 5월 일

발 주 자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성 명 : 동 해 시 장



(인)

신기술·특허
보유자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29-59, 3층 2호(갈천동)

성 명 : (주)지에프씨 대표 장덕수



(인)

